

조 정 조 서

사 건

본소) 이혼 및 양육자 지정

반소) 이혼 및 재산분할

원고(반소피고)

피고(반소원고)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

조효동

사 건 본 인

조 정 장 판 사

조 정 위 원

조 정 위 원

기 일:

장 소:

공개 여부: 공 개

각 출석

다음과 같이 조정성립

조 정 조 항

-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는 이혼한다.
-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.
 -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2026. 1. 31.까지 53,000,000원을 지급한다.
만일 원고(반소피고)가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 - 피고(반소원고)는 위 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부동산 산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, 그 집행을 해제한다.
 -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(즉,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,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).
 -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.
-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(반소원고)를 지정한다.
-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6. 1.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일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600,000원씩을 매월 5일에 지급한다.
- 원고(반소피고)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.
 - 일시: 1) 매월 2회, 둘째 및 넷째 토요일 12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(숙박 포함)

- 2) 사건본인들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각 4박 5일간
- 3) 추석 및 설날 연휴기간 중 각 1박 2일간
- 4) 전화 및 영상통화는 자유롭게 한다.

나. 방법: 원고(반소피고)가 면접교섭을 위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서 책
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고, 면접교섭을 마친 후 사건본인들
의 주거지로 다시 데려다 주어야 한다.

다. 협조의무

- 1)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
하고,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, 양육자는 양육 과정에서, 비양육자는 면접교
섭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 대한 험담을 사건본인들에게 하지 않는다.
 - 2) 위 면접교섭의 세부적인 일정과 방법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·변경할 수 있다. 다
만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늦어
도 3일 전까지 문자 등으로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.
 - 3)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, 사건
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.
6.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는 앞으로 서로에게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
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,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, 그
에 관한 일체의 분쟁(민사, 형사, 가사 모두 포함)을 제기하지 아니한다(부제소합의).
7. 원고(반소피고)는 나머지 본소청구를, 피고(반소원고)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
한다.
8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